

## 운영규정 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관명   | 한마음실버케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(증설)일자     | 2021.07.01. / 2025.08.13    |
| 급여종류  | 노인요양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원           | 49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표자   | 한동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규모         | 대지면적 1,007㎡ ,건물면적1,271.922㎡ |
| 주 소   |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78, 7, 8층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급여   | 식사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000 원 (1식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000 원 (1식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입소대상자 |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력기준  |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급여  |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서비스 |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보호  |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상책임  |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소계약        |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기간        |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해지        |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호자 권리 및 의무 |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사용주의      |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,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|